



제417회 국회(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 공제회 사무별 필요 개인정보 구체화 >

■ 정부 제출(의안번호 제2201666호)

2024. 8.

교 육 위 원 회

전문위원 강대훈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 공제회 사무별 필요 개인정보 구체화	2

I. 제안경위

1. 제 출 자: 정부
2. 제출연월일: 2024. 7. 12.
3. 회부연월일: 2024. 7. 1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한국교직원공제회가 회원에 대한 급여 등의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것과 관련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처리하는 고유식별정보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구체화하고, 건강에 관한 정보가 필요한 사무를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회원에 대한 급여 및 대여에 관한 사무로 한정함으로써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도록 하려는 것임.

Ⅲ. 검토의견

□ 공제회 사무별 필요 개인정보 구체화

개정안은 한국교직원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함)가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민감정보와 고유식별정보(이하 “개인정보”라 함)를 구체화하여 사무별로 한정함으로써,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5조의2제1항).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제회(제4조 및 제11조에 따른 공제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u>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u> 를 처리할 수 있다.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 ----- ----- ----- ----- ----- <u>건강에 관한 정보(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무로 한정한다),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제2호의 사무로 한정한다) 또는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u>

1. ~ 5. (생략) ② (생략)	합된 자료를 -----. 1. ~ 5.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	--

공제회는 교육 구성원과 그 소속 법인에 대한 효율적 공제제도를 확립하여 교육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해 설치된 것으로,¹⁾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서는 정관에 부담금의 납입과 급여에 관한 사항,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등을 포함하도록 하고(제4조),²⁾ 공제회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되(제11조),³⁾ 사무 수

1)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교직원공제회를 설치하여 교육기관·교육행정기관 또는 교육연구기관의 교육공무원·교원 및 사무직원 등으로 재직 중이거나 재직하였던 교육 구성원과 그 소속 법인에 대한 효율적인 공제제도(共濟制度)를 확립함으로써 교육 구성원의 생활 안정과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교육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2)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4조(정관) ① 공제회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
6. 부담금의 납입과 급여에 관한 사항
7. 조직
8.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9. 대의원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
10. 각종 사업에 관한 사항
11. 업무와 그 집행에 관한 사항
12. 회계에 관한 사항
13. 그 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제회의 정관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3)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11조(사업) ① 공제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급여
2.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 사업
3.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
4.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영

행을 위해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25조의2).⁴⁾

개정안은 공제회가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체화하여 사무별로 한정함으로써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도록 하려는 것으로,

공제회의 사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의 사용을 허용하되 그 범위를 현행법에 비해 축소함으로써, 개인정보 보호 원칙⁵⁾을 준수하고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입법조치로 보임.⁶⁾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공제회는 제1항제4호에 따른 사업에 관하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이용자로부터 이용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4)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공제회(제4조 및 제11조에 따른 공제회의 업무를 위탁받은 기관을 포함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1.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2. 회원(회원의 유가족을 포함한다)에 대한 급여에 관한 사무
3. 회원에 대한 대여에 관한 사무
4.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 사업에 관한 사무
5.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② 공제회는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5) 「개인정보 보호법」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처리 목적을 명확하게 하여야 하고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적법하고 정당하게 수집하여야 한다.

6) 참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처리의 필요성을 확보하고 개인정보의 수집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25조의2에서 처리할 수 있는 고유식별정보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한 바 있음(개인정보보호위원회,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대한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결과, 2022.9.8.) 「개인정보 보호법」

제8조의2(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의 제정 또는 개정을 통하여 개인정보 처리를 수반하는 정책이나 제도를 도입·변경하는 경우에는 보호위원회에 개인정보 침해요인 평가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보호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법령의 개인정보 침해요인을 분석·검토하여 그 법령의 소관기관의 장에게 그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권고할 수 있다.

개정안은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사무를 현행법과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모든 사무에 대하여 처리가 가능했던 건강 관련 정보와 여권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사무의 범위를 축소하고, 운전면허번호는 사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표 1] 공제회 사무별 처리 가능 개인정보 비교

개인정보 처리 필요 사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건강관련 정보		주민등록 번호		여권 번호		외국인등록 번호		운전면허 번호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	○	○	○	○	×	○	○	○	×
회원(유가족 포함)에 대한 급여에 관한 사무	○	○	○	○	○	○	○	○	○	×
회원에 대한 대여에 관한 사무	○	○	○	○	○	×	○	○	○	×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 사업에 관한 사무	○	×	○	○	○	×	○	○	○	×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	×	○	○	○	×	○	○	○	×

주: 음영 부분은 개정안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 가능 여부가 변경되는 부분임

자료: 한국교직원공제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재작성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은 개인정보의 처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되, 법령에서 해당 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⁷⁾

7)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민감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사상·신념, 노동조합·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민감정보”라 한다)를 처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민감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고유식별정보의 범위) 법 제2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이 법 제18조제2항제5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의 해당 정보는 제외한다.

1. 「주민등록법」 제7조의2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2. 「여권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여권번호

공제회 사무 수행에 필요한 개인정보는 「한국교직원공제회법」에 규정될 필요가 있으므로, 개정안에 개인정보 처리 필요 사무와 이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가 적절하게 규정되었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음.

먼저 개인정보 처리가 필요한 사무가 적절하게 규정되었는지 살펴보면, 개정안은 개인정보 처리 필요 사무를 현행법과 동일하게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등 5개 사무로 유지하고 있음(제25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

그러나 2024년 「한국교직원공제회법」 개정⁸⁾에 따라, 공제회의 사업을 규정한 제11조에서 ‘기금조성을 위한 사업(제11조제3호)’의 일종으로 분류되었던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영(제11조제4호)’이 별도의 호로 구분되었음.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영’은 입찰 참가 자격요건 확인,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관련 업무 등을 위하여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의 처리가 필요한 사무이므로, 개인정보 처리 필요 사무를 규정한 제2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서도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제25조의2제1항제5호)’와 구분하여 별도로 규정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보임.

3. 「도로교통법」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의 면허번호

4. 「출입국관리법」 제31조제5항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

8) 한국교직원공제회법(법률 제20183호, 2024.2.6. 개정, 2024.5.7. 시행)

다음으로 공제회의 사무를 위해 필요한 개인정보가 적정하게 규정되었는지 살펴보면, 개정안은 공제회가 수행하는 사무에 필요한 개인정보를 민감정보 중 건강 관련 정보, 고유식별정보 중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외국인등록번호로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공제회는 2024년 5월 보안 안정성 향상 및 고객 편의 제고를 위해 ‘페이퍼리스 시스템’을 도입하였고, 이에 따라 주민등록증, 외국인등록증, 운전면허증을 스캔하여 업무를 처리하므로, 해당 시스템을 활용하는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회원(유가족 포함)에 대한 급여에 관한 사무, 회원에 대한 대여에 관한 사무’ 등 3개 사무에 대해서는 운전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활용할 수 있도록 보완할 필요가 있음.

[표 2] 공제회 사무별 처리 가능 개인정보 보완 필요 사항

개인정보 처리 필요 사무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건강관련 정보		주민등록 번호			여권 번호		외국인등록 번호			운전면허 번호		
	현행	개정	현행	개정	보완	현행	개정	현행	개정	보완	현행	개정	보완
회원의 부담금에 관한 사무	○	○	○	○		○	×	○	○		○	×	○
회원(유가족 포함)에 대한 급여에 관한 사무	○	○	○	○		○	○	○	○		○	×	○
회원(유가족 포함)에 대한 대여에 관한 사무	○	○	○	○		○	×	○	○		○	×	○
회원을 위한 각종 복리·후생 사업에 관한 사무	○	×	○	○		○	×	○	○		○	×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	×	○	○		○	×	○	○		○	×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					○			

주: 음영 부분은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한 부분임

자료: 한국교직원공제회 제출자료를 바탕으로 제작함

개정안과 관련하여 교육부와 공제회는 사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개인정보를 구체화하여 사무별로 한정함으로써,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서 최소한의 개인정보가 처리되도록 하려는 법률안 개정 취지에 이견이 없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189

< 참고자료 1 >

「한국교직원공제회법」 제25조의2 사무별 처리정보 세부내용

(제1호) 회원의 부담금: 회원의 ‘상품 가입’ 관련 사무 • 종합복지급여(종신·정기보험, 질병·상해·어린이보험 성격의 상품) 가입 시 심사를 위해 <u>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u> • 제 급여(장기저축급여, 장기저축급여분할급여금, 목돈급여, 퇴직생활급여, 종합복지급여) 가입 시 신분 증명을 위해 <u>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u>를 처리
(제2호) 회원(유가족 포함)에 대한 급여: 회원의 ‘지급 청구’ 관련 사무 • 종합복지급여 청구 시, 회원이 상병(傷病)으로 퇴직 시 <u>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u> • 제 급여 청구 시 회원의 신분 증명을 위해 <u>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u>를 처리 • 회원의 유족이 각종 급여 및 유족급여금 청구 시 유족이 내국인일 경우에는 <u>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u>, 유족이 외국인일 경우에는 <u>외국인등록번호 또는 여권번호</u>를 처리
(제3호) 회원에 대한 대여: 회원에 대한 ‘대출 승인’ 관련 사무 • 회원이 질병·상해로 인한 무이자대여 신청 시 승인 여부 판단을 위해 <u>건강에 관한 정보를 처리</u> • 각종 대여 신청 시 내·외국인 회원의 신분 확인 및 승인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u>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운전면허번호</u>를 처리
(제4호) 회원을 위한 복리·후생 사업: 회원을 위한 ‘혜택’ 제공 관련 사무 • 복리·후생을 제공받는 회원의 신분 증명 및 제세공과금 신고 대행을 위하여 <u>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u>를 처리
(제5호)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기금운용’을 위한 제 사업 관련 사무 • 한국교직원공제회 회관 임대사업 시, 개인인 임차인과의 임대차 계약 관련 업무(임차인의 신분 증명 등)를 위하여 <u>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u>를 처리
[보완필요] (제6호) 전자조달시스템(S2B) 운영 사업: 전자조달시스템의 구축·운영에 관한 사무 • 입찰 참가 자격요건 확인 및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 관련 업무(대표의 신분 증명 등)를 위하여 <u>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u>를 처리

자료: 한국교직원공제회

< 참고자료 2 >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주요 사업

구 분			내 용
공 제 제 도	저축	장기저축급여	재직 교직원의 노후생활자금 마련을 위한 적금형 장기 저축제도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	퇴직 시 장기저축급여 퇴직급여금 중 일부를 분할수령할 수 있는 연금형 제도
		목돈급여	재직 교직원의 여유자금으로 목돈마련을 위한 저축제도
		퇴직생활급여	퇴직 교직원을 위한 고수의 노후생활 저축제도
		법인예탁급여	학교법인 등이 보유한 적립금 등의 안정적 운용을 위한 예금형 제도
	보험	종합복지급여	각종 불의의 사고·질병에 대비한 생명보험
	대여	일반대여	회원의 생활 안정을 위한 대여제도
		무이자대여	회원의 보건의료 또는 재해복구를 위한 대여제도
		복지누리대여	회원이 결혼·출산, 주택구입·임차 시 저금리로 이용 가능한 대여제도
		분할급여대여	퇴직회원이 장기저축급여 분할급여금을 담보로 이용할 수 있는 대여제도
회원복지 서비스	각종 부조금		신규·재가입 축하기념품, 결혼축하금, 출산축하금 등
	회원복지시설		The-K마음쉼, The-K휴스टे이, 무료 법률·세무·노무상담소 등
	The-K행복서비스		영화관람, 공연관람, 콘서트 등

주: 2024.7.31.기준

자료: 한국교직원공제회